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공사현장 장마철 피해 예방 특정감사 -

2020.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영주시 (00과· △△과)	개간 및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	훈계3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개간 및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 적정	00과			훈계	
		00과			훈계	
		△△과			훈계	

3. 처분요구일람표

1) 개간 및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2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3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영주시 00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간 및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00과, △△과
내 용

영주시 00로 00-00 @@@은 2015.5.29. 아래 [표1]과 같이 영주시 00과로부터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고 개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1] 개간허가 내역

구 분	허가위치	사업면적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 고
				성 명	주 소	
최초허가 (‘15.5.29)	영주시 ##동 산**(42,929㎡)	29,700	2015.5.29. ~2016.6.10.	@@@ 외1	영주시 00로000-00	
변경허가 (‘15.12.17)	“	26,400	2015.5.29. ~2016.6.10.	@@@	영주시 00로000-00	계획 변경
변경허가 (‘17.2.28)	“	21,700	2015.5.29. ~2017.5.28.	@@@	영주시 00로000-00	계획 변경
변경허가 (‘19.7.3)	“ 산&&-&	21,700	2015.5.29. ~2020.5.28.	@@@	영주시 00로000-00	기간 연장
변경허가 (‘20.6.4)	“ 산&&-&	21,700	2015.5.29. ~2021.5.28.	@@@	영주시 00로000-00	기간 연장

또한, 위 사업시행자는 아래 [표2]와 같이 영주시 00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2] 개발행위허가 내역

구 분	허가위치	사업면적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 고
				성 명	주 소	
최초허가 (‘17.3.14)	영주시 ▲▲동 산●● 외 3필지	5,480	2017.3. ~2018.3.	@@@	영주시 00로000-00	
변경허가 (‘19.4.15)	“	5,480	2017.4.17. ~2020.4.16.	@@@	영주시 00로000-00	기간 연장
변경허가 (‘20.5.11)	“	5,480	2017.4.17. ~2021.4.16.	@@@	영주시 00로000-00	기간 연장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간”이라 함은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에 따르면 개간사업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아래 [표1]와 같이 개발중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표1] 토사조절부 용량(개발중)

구 분	바닥면적 (㎡)	퇴사량 (㎥) ①	퇴사위 (m)	침전부용량 (㎥) ②	토사조절부 용량①+②	토사조절부 (m)	비고
HC1	21.9	139	1.7	55	194	2.0	임시침사지
HC2	182.5	577	1.8	156	733	2.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HC2-1	5.9	20	0.9	17	37	1.2	임시침사지
HC3	28.8	221	2.0	74	295	2.3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HC4	27	214	2.0	72	286	2.3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위 개발사업자 @@@은 영주시 00과로부터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침사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인근 소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되게 하였으며 개간사업으로 발생한 사토를 사업구역 밖 &&&번지와 ▼▼▼번지 등에 임의 적재하였다.

또한, 위 개발사업자는 영주시 △△과로부터 위 [표2]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허가 구역 외 토지를 임의 훼손하였으며 허가조건에 명기된 구역경계 표시를 미설치 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림]



그런데도, 영주시(00과, △△과)는 위 개발사업자가 승인 및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하고 있는데도 현장확인 및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을 연

장해 주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개별법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행중인 사항을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행정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